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특별공급(공통사항) 청약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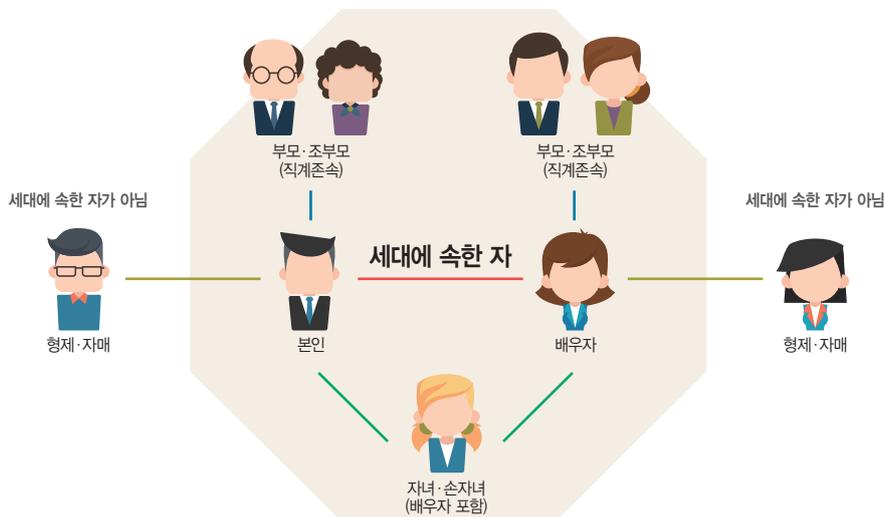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청약자격	주택 소유	세대원 전원 무주택			
	기본 자격	해당 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청약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청약가능 면적		59A, 59B, 59C, 84A, 84B, 84C		59A, 59B, 59C, 84A, 84B, 84C, 111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 이상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각 유형별 공급 세대수의 300%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동일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에도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분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음 ※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공급 한정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봄(노부모 부양 제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 자에 해당됨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동일 주택형)로 동일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 후 입주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 같은 주택형 다른 공급유형의 낙첨자들과 함께 추첨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은 약식으로 표기된 것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청약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구분	내용
무주택세대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제2조의 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특별공급(기관추천) 청약안내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구분	59A	59B	59C	84A	84B	84C	111	합계
국가유공자	1	1	-	7	2	1	-	12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	6	3	1	-	1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7	2	1	-	12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6	2	1	-	12
장애인	경기	1	1	14	4	1	-	24
	서울	1	1	-	7	2	-	12
	인천	1	-	1	6	3	-	12
소계	9	4	5	53	18	7	-	96

■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인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해당 기관 및 청약통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추천기관</th> <th>청약통장</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td> <td>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td> <td rowspan="2">필요없음</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r> <tr> <td>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 rowspan="3">청약통장에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td> </tr> <tr> <td>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td> </tr> <tr> <td>중소기업 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 종사자</td> </tr> </tbody> </table>	구분	추천기관	청약통장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	필요없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청약통장에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 종사자
구분	추천기관	청약통장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	필요없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청약통장에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 종사자															
우선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름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해당기관에 신청 → 관계기관의 장이 우선순위 결정(예비대상자 포함) 및 사업주체에 명단 통보 → 통보 대상자(관계기관의 장이 우선순위로 결정한 자)의 특별공급 청약(예비대상자 포함) ※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 배정에서 제외됨 ※ 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함으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자정기관(한국감정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해야 함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제외)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청약안내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구분	59A	59B	59C	84A	84B	84C	111	합계
경기도 거주자	5	2	3	27	9	4	2	5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4	2	2	26	9	3	2	48
소계	9	4	5	53	18	7	4	100

* 경기도 거주자에서 경쟁 발생시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어나 입양 자녀를 포함하여 선정된 경우 입주 시까지 출산과 관련된 자료 제출 및 입양 유지가 되어야 함 ※ 입주 시점까지 입양이 유지되지 않고 파양될 경우 향후이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청약통장에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
우선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화성시 포함 경기도 거주자 50% 우선 공급 ②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세대수의 50%를 화성시 및 경기도에 우선 공급하며, 기타 수도권에 50%를 공급 화성시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시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자)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남는 경우 기타 경기 거주자 순으로 선정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인 경우 배우자의 미성년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① 미성년 자녀수	40점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② 영유아 자녀수	15점	영유아 3명 이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
		영유아 2명	10	
		영유아 1명	5	
③ 세대 구성	5점	3세대 이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④ 무주택 기간	20점	10년 이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선정 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인정)이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부터 기간을 산정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	10년 이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인정)이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시 기준 /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 ※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10년 미만	10	
		1년 이상~5년 미만	5	
⑥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점	10년 이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청약통장 최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함
계	100점			

- ①, ②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
- ③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④, 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④, ⑤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⑥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특별공급(신혼부부) 청약안내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구분	59A	59B	59C	84A	84B	84C	111	합계
우선공급(75%)	14	6	7	80	27	12	-	146
일반공급(25%)	4	2	2	26	9	3	-	46
소계	18	8	9	106	36	15	-	192

■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전 배우자였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청약통장에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
우선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공급(75%)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일반공급(25%)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1. 우선공급 75%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0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일반공급 25%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2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2. 동일 요건(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또는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나.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기간 중 자녀가 없거나,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3.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자) 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 포함)수가 많은 자 다.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 포함)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임신의 경우 입주시까지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입주 시점까지 입양이 유지되지 않고 파양될 경우 향후이라도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5,554,984원 ~6,665,980원	6,226,343원 ~7,471,610원	6,938,355원 ~8,326,025원	7,594,084원 ~9,112,900원	8,249,813원 ~9,899,774원	8,905,542원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30% 이하	6,665,981원 ~7,221,478원	7,471,611원 ~8,094,245원	8,326,026원 ~9,019,860원	9,112,901원 ~9,872,308원	9,899,775원 ~10,724,756원	10,686,650원 ~11,577,20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인당 평균소득(655,729)*(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 재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
※ 단, 세대원의 실종·병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우선공급하는 경우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특별공급(노부모부양) 청약안내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구분	59A	59B	59C	84A	84B	84C	111	합계
세대수	3	1	1	16	5	2	1	29

■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자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자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청약통장에 가입 후 24개월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1순위 제한사항)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선정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총 32점)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총 35점)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총 17점)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청약가점 점수 (총 84점)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 + ② + ③			

